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7 선고 2020가단51279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0. 9. 9.

판결 선고2020. 10. 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84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0. 5.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20. 8. 5.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이백규

별지